

## 농어업인안전보험/어선원재해보험

### 농어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5인미만 개인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 보험료 50% 국고지원

• 국고지원 외에 지자체 별도 보험료 추가 지원(지자체별 지원비율은 상이함)

### 어선원재해보험



어업의 경우 3톤이상 어선은 어선원재해보험 의무가입이며,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산재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험 적용불가하며,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구분	산재보험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근거법령	산재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자	근로복지공단	수협중앙회	NA농협생명, 수협중앙회
의무가입	모든 사업장	3톤 이상 선주	-
임의가입	5인 미만 농어업사업장	3톤 미만 선주 (원양어선 제외)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근로자 단위 가입)
정부지원	-	20~70% (선박 규모(톤)별 상이)	국고보조금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 및 지자체 지원금
보험금 종류	요양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금
	상병보상연금	상병급여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장해급여	장해급여	장해급여금
	휴업급여	일시보상급여	휴업급여금
	유족급여	유족급여	유족급여금
	장의비(葬儀費)	장례비(葬禮費)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행방불명급여	행방불명급여금 (어업인안전보험 해당)
	간병급여	소지품 유실급여	직업재활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등	

## 각 보험 관련 안내 전화



### 농업인 안전보험

- 신청방법: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 문의전화: 1544-4000(농협생명주식회사)

### 어선원 재해보험 및 어업인 안전보험

- 신청방법: 거주지 지역 수협에 신청
- 정책보험상담: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88-4119

지역본부	주소	연락처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98 BM타워 3층 (치평동)	062) 950-2520~9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13 수협청사 2층 (상남동)	055)210-6250~4
경인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50 2층 (항동7가)	032)890-4570~7
강원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89 2층 (옥천동)	033)610-2550~6
충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7 2층 (신흥동)	041)939-9700~14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329 2층 (서흥남동)	063)463-0761~3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 대로260 한중빌딩 7층 (죽도동)	054)256-7571~3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23 번길 3 수협은행 4층 (남포동 6가)	051)250-2550~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우로 84 4층 (연동)	064)747-4107, 0077

www.moel.go.kr

2023.2.3 시행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제6호개정(2022.8.2. 개정)으로 2023.2.3.부터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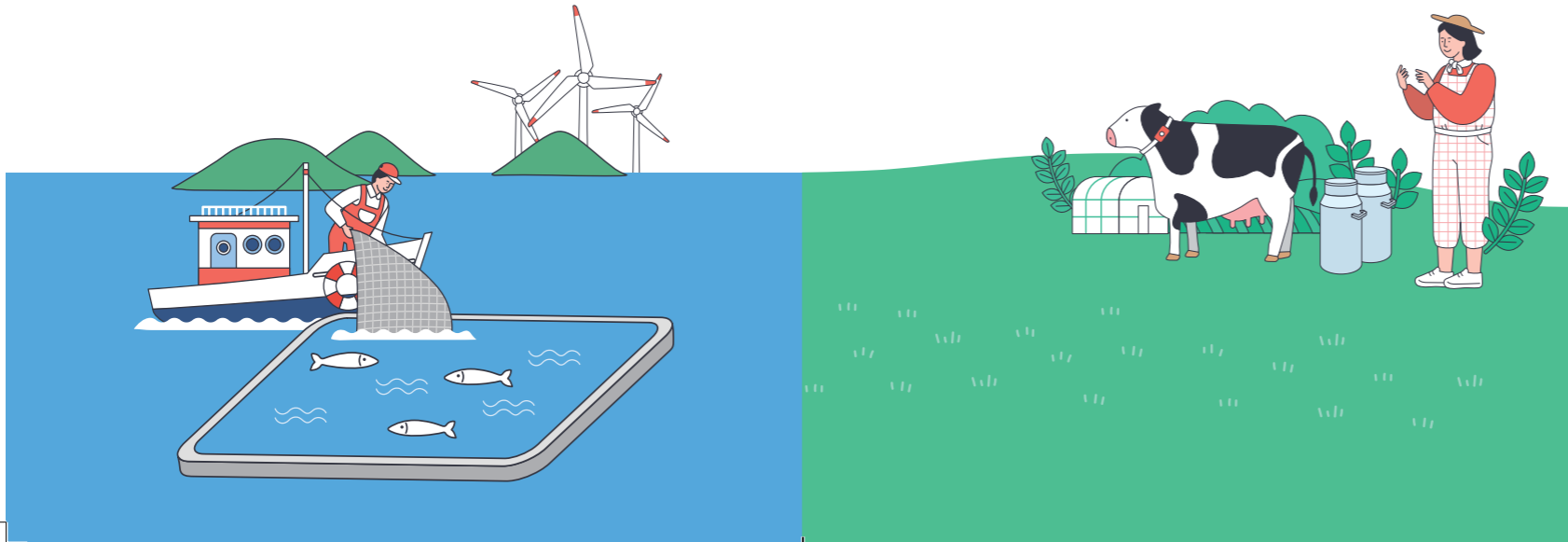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제출

확약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 모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 단위로 가입**하며, 고용허가서 **신청 시점**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험 가입 불가

확약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보험 가입 미이행 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발급 받은 경우(법 제19조 제1호)로서 **고용허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바람



##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사식] (신설 2022. 12. 9.)  
※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업종	사업내용

#### 2. 확약내용

위 신청인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 모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며,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00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m<sup>2</sup>(재활용품)]